

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 직명	④ 응시 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사용			⑧ 주민등록번호	-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(재신체검사 결과 등)	
---	--

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분야 전문의)

(서명 또는 인)

신체검사 판정결과	[]합 격 []불 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
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,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 - "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"란에는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신체검사서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
 - "신체검사 판정결과"란에는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(별지 제1호서식)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, 불합격,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.
 - ※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대상 질환, 사용 목적,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-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
 -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,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,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
 - ※ 재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,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.
 - 다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